

용진군 인천공항소음피해



인천광역시용진군의회

나라살림연구소
Fiscal Reform Institute

제출문

웅진군의회

귀하

이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창수	
책임연구원	송종운	

옹진군의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주관기관



인천광역시옹진군의회

시행기관



나라살림연구소
Fiscal Reform Institute

연구개요

연구과제: 옹진군 공항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체계적정리

수행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10월 23일

주관기관

○ 옹진군의회

	대표	의원	의원
구분			
성명	이종선	김영진	백동현

시행기관

○ 나라살림연구소

○ 연구책임: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행정학 박사)

○ 책임연구원: 송종운(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지원센터장, 경제학 박사)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옹진군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옹진군 공항소음피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먼저 옹진군 공항소음피해는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항소음피해는 주민들의 공항소음피해 호소를 반영하기 보다는 객관적 측정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동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측정망 설치와 이를 근거로 확인된 측정결과에 따른 결과만을 인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호소와 일정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주민들의 공항소음피해호소와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측정 방식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측정요건이 현실을 보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우선 인천공항은 설계 당시부터 장봉도와 신시모도를 통과하여 착륙하지 않을 수 없게 설계되어 항공기 운행이 늘어날수록 공항소음피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률 등에 따라 소음피해 측정한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준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옹진군 공항소음피해 측정망은 8곳이지만, 이 중 장봉(서), 장봉(동), 모도(북)은 운영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장봉(북)과 신도는 소음측정망 설치 위치가 야산과 지면이어서 주민들의 공항소음피해 측정에 적합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측정망 설치와 그 결과가 주민공항소음피해 대책 사업의 근거가 됨에 따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관행으로는 주민들의 피해현황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어 보인다. 인천공항소음피해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소음측정과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음피해측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관련 문제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어서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와 협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민접촉이 전문하다시피한 것 때문이라 파악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준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서면”을 통해 제기한 것만을 간추려 <항공기소음 서면민원 현

황>을 제출하면서 23년(1월~8월)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이 단 두 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이 행정문서나 서면민원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 나아가 본연구자가 주민 문진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민원은 (본연구자가 확인한 것만 카운트 하여도 23년 민원은) 수십차례에 해당된다. 가령 장봉도의 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특히 주목할만한데, 착륙기가 뿌려대는 항공유 잔류가 본인의 집과 밭 등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공사측에 수십차례 전화통화로 항의하고 관련 직원들의 통화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누락시킨 것은(혹은 추정되는) 분명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의 소통 노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주민들의 민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 이어서 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음대책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항소음관련 소음대책조직이 여럿 있으나 인천공항 소음대책 조직은 다른 곳과 비교해 유독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함이 특징이다. 당장 인근 김포공항소음대책조직만 하더라도 조직에 대한 주민참여가 행정자치구별로 보장되어 있으나, 인천소음대책 조직은 단 두명의 주민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또한 행정구역별 배려가 이루어 진것도 아니다. 따라서 주민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 끝으로 본연구는 추후 인천공항소음피해 개선을 위한 연구가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주요 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공항소음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도출 ▲공항소음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도출 ▲소음피해(인근)지역의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도출 ▲소음측정망 위치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방향 도출 ▲소음피해 주장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도출.
- 둘째, 공항소음이 유발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실질적 파악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과 지역 주민의 소득 추이 간 인과관계 파악▲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과 지역 주민 건강 및 생활 환경 간 인과관계 파악.
- 셋째, 소통과 협의에 의한 공항소음피해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도출 ▲주민대책위/지자체/공항공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도출 ▲옹진군 공항소음피해 개선을 위한 지역대책위 조직의 개선 방향 도출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1
3. 연구범위 및 내용	1
4. 연구의 기대효과	1
II. 용진군 공항소음피해	5
1. 소음과 소음피해에 대한 일반적 이해	6
2. 용진군 공항소음대책(인근) 지역 현황	10
III. 인천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현황	34
1. 공항소음피해 대책 사업 현황	33
2. 타지역 주민 지원사업	38
3.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42
4. 용진군의 소음피해대책사업 및 추진계획('11~'25)	49
IV. 주민요구사항	51
1.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관련 법적 근거	52
2. 용진군 주민의 요구사항	55
3.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전국현황	62
V. 부록	69

표 목 차

<표 1> 소음도의 인체 영향	7
<표 2> 인천공항 여객/화물 주간/야간 운항 현황(2013.1~2023.8)	15
<표 3> 인천공항 여객기 주간/야간 운항 현황(2013.1~2023.8)	15
<표 4> 인천공항화물기 주/야간 운항 현황(2013.1~2023.8)	16
<표 5> 인천공항 활주로별 운항 현황(2013.1~2023.8)	16
<표 6> 인천공항 운항 노선수(2001~2023.8)	16
<표 7> 인천공항 활주로 및 재포장 공사 현황	17
<표 8> 소음대책지역 최초고시: 2010.11.30	18
<표 9>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2016.1.6	18
<표 10>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2023.1.1	19
<표 11> 고시별 소음대책지역 추이	19
<표 12> 항공기소음측정기준 변경후, 측정결과	23
<표 13> 인천공항소음피해 측정결과(옹진군청 제출자료)	23
<표 14> 인천공항소음피해 측정결과(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24
<표 15>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종류	35
<표 16> 옹진군 소음대책사업	36
<표 17> 옹진군 주민유대강화사업	36
<표 18> 옹진군 주민지원사업	37
<표 19> 2017년 공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액	38
<표 20> 김포공항 주민지원사업 세부집행 실적	38
<표 21> 김해공항 주민지원사업 세부집행 실적	39
<표 22>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	46
<표 23> 중기 계획별 사업비 총괄 내역	49
<표 24> 중기 계획별 사업비 총괄 내역 3차 중기계획 사업비	49
<표 25> 2차중기 계획 사업비 세부 내역(2016~2020년)	49
<표 26> 활주로 재포장 공사 연차별 계획	57
<표 27> 항공기소음 서면민원 현황	60
<표 28> 인천 공함소음대책위원회 구성	63
<표 29>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1차(11 ~ 15년) 추진실적	68

<표 30>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2차(16 ~ 20년) 추진실적 68
 <표 31>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3차(21 ~ 23년) 추진실적 69
 <표 32>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1/2/3차 추진결과 69

그림 목 차

<그림 1> 항공기의 주요 소음원 8
 <그림 2> 항공기의 소음발생원과 시간에 따른 소음변화 9
 <그림 3> 옹진군 관내도 10
 <그림 4> 옹진군 장봉군, 신시모도 10
 <그림 5> 인천공항 소음피해(인근)지역 분포도 11
 <그림 6> 인천공항 소음피해(인근)지역 분포도 및 항공이동 11
 <그림 7> 옹진군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12
 <그림 8> 장봉도 및 신시모도 12
 <그림 9>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1 13
 <그림 10>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2 13
 <그림 11>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3 14
 <그림 12>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4 14
 <그림 13> 정부소음대책 조직도 64
 <그림 14> 인천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64
 <그림 15> 김포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65
 <그림 16> 김해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65
 <그림 17> 제주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66
 <그림 18> 울산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66
 <그림 19> 여수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67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옹진군 공항소음피해는 주민소득 뿐 아니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측정 뿐 아니라 이를 반영한 피해대책사업은 요원하다. 나아가 공항소음 관련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민대책기구와의 소통 개선도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항소음피해의 문제점을 팩트에 기반하여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한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내용

- 옹진군 인천공항소음피해 종합적 정리
- 옹진군 인천공항소음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 확인
- 옹진군 인천공항소음피해 관련 주민 요구 및 최근 상황 정리

3. 연구범위 및 내용

- 연구 기간: 2023. 6. 26. ~ 10. 23.
- 시간 및 공간적 범위: 2023년, 옹진군
- 연구방법론
 - 문헌조사, 주민간담회

4. 연구의 기대효과

- 옹진군 인천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사실적 파악 및 향후 피해대책 수립과 주민지원,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 2단계 연구를 위한 주요 과제 발굴

II. 용진군의 공항소음피해

1. 소음과 소음피해에 대한 일반적 이해¹⁾

1) 소음의 정의

□ 소음이란

- 소음이란 원치 않는 소리이며, 환경소음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소음공해는 다른 환경문제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민들의 소음에 의한 피해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 환경소음의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경제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음. 경제적 영향은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대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 등 고정 자산에 대한 피해와 소득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 어류 등에 대한 소음 피해를 의미하며, 환경적 영향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복지의 피해를 의미. 최근에는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체 위해성 등 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1)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항공기 소음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연구”, 2016.12. 참조

<표 1> 소음도의 인체 영향

소음 (dB)	음원의 예	소음의 영향	비고
20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적	
30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회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35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WHO침실기준
40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깊이 낮아짐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환경기준설정선(주간)
60	보통의 대화소리 등	수면장애 시작	
70	전화벨소리, 거리	TV·라디오 청취 방해	공사장규제기준
	시끄러운 사무실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 수축	
80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작업장 내 기준
90	소음이 심한 공장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	

출처: 항공기 소음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연구,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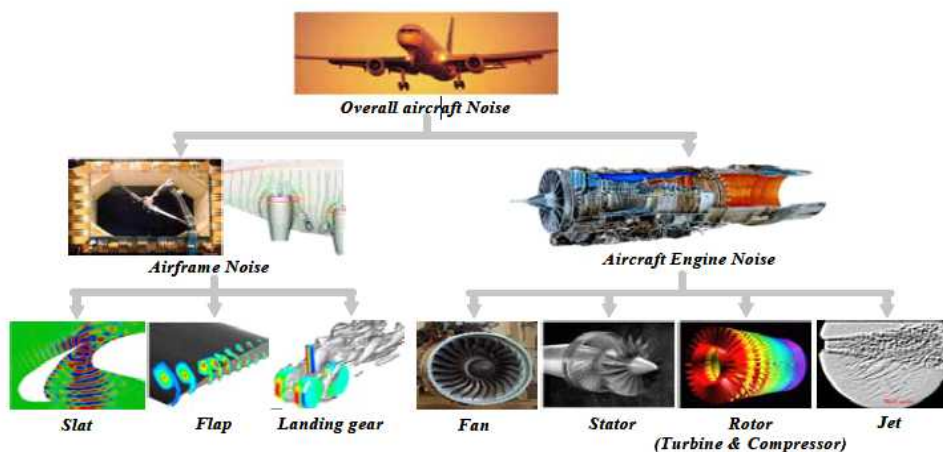
- 인체에 대한 소음의 영향은 청력 손실에서부터 불쾌감까지 광범위. 소음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청력 장애, 대화방해, 수행능력 및 정신적 영향, 수면방해, 불쾌감 들을 들 수 있고, 간접적 영향으로는 고혈압 등 심혈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들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는 소음의 건강 영향에 대해 “기능 장애나 부가적 스트레스의 보상 능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다른 환경인자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생체의 형태와 생리의 변화” 로 정의한 바 있음

2) 공항소음과 항공기 소음

□ 항공기의 주요 소음원인

- 초기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 내부 탑승인원의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고려 대상. 하지만 민항기의 여객수송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대형화와 고속운항 중심, 군용기의 급가속·급기동 능력 중심의 발전에 의해 지상에 미치는 항공기소음의 영향이 증가. 이에 따라 공항의 종사자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중요시되었으며, 항공기소음은 항공기 탑승인원뿐만 아니라 공항 지역 거주자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환경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됨
- 항공기소음은 주로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헐적 충격음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 소음원이 상공이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그 피해면적이 광범위한 특징이 있음
-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의 주요 소음원은 이·착륙, 택싱(taxiing), 지상 기능점검 시에 발생. 항공기소음은 내부 생성 소음과 외부 생성 소음으로 구분. 전자를 추진계 소음, 후자를 공기역학적 소음[공력소음]이라 하며 <그림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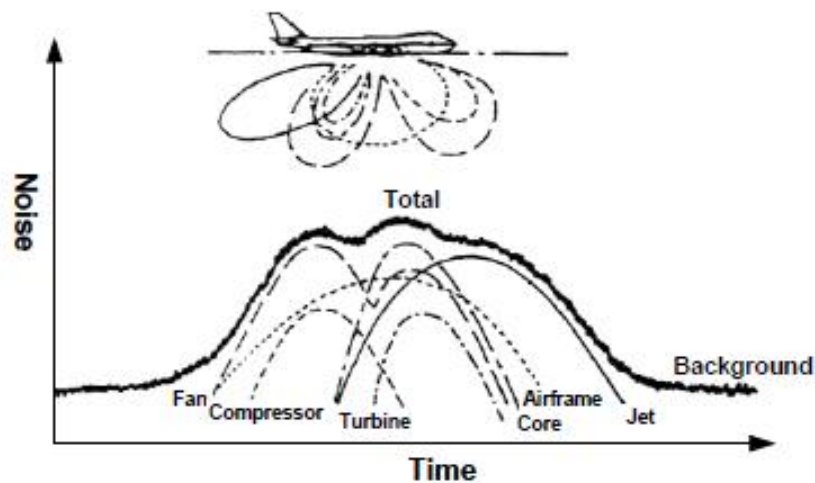
<그림 1> 항공기의 주요 소음원



출처: 항공기 소음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연구,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2016.12)

- 공항 항공기 전방에 위치한 엔진의 팬 및 압축기 소음이 가장 먼저 들리고, 다음이 터빈 및 코어 소음, 그리고 후방에서 분사되는 제트분사 소음 순이며, 동체소음은 긴 지속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 항공기의 소음발생원과 시간에 따른 소음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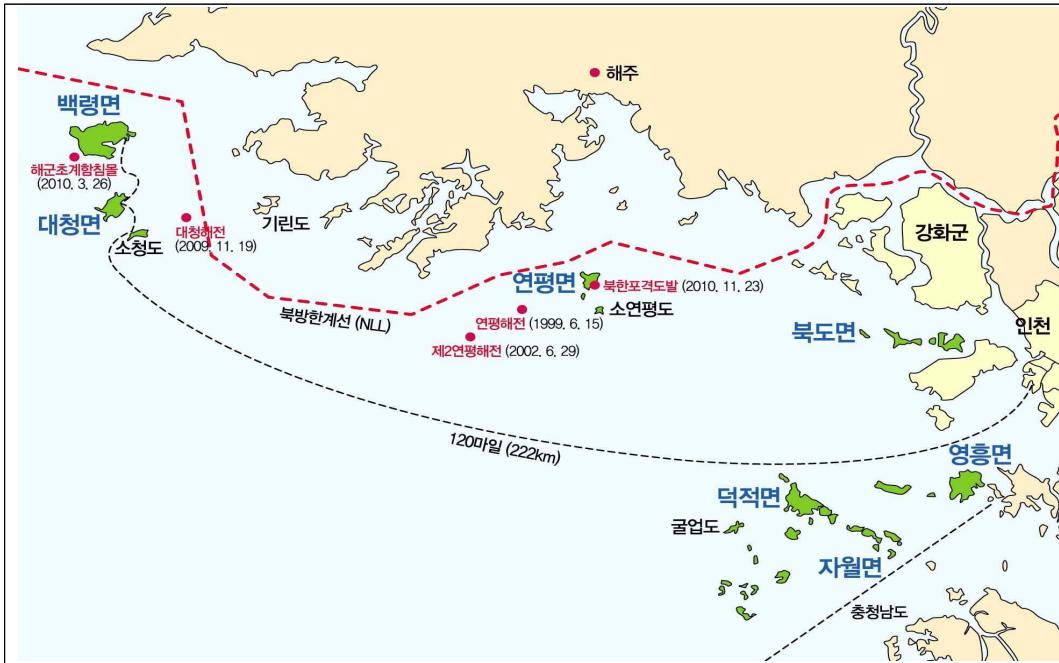
출처: 항공기 소음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연구,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2016.12)

- 항공기 소음의 전파 특성
 - 공항 항공기가 이·착륙 시 공항 인근에서 저공으로 비행할 때 지상의 수음자는 큰 소음을 감지. 항공기가 수음자 위에서 비행할 때 소음도가 상승하다가 수직상공에 이를 때 최대 소음치가 형성되며 그 후 점차 감소
 - 항공기가 관측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고주파 대역의 소음이 지배적이고 관측지점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저주파 대역이 주를 이룸
 - 항공기소음은 지상 교통 소음과는 다르게 지형 장애물의 영향 없이 원거리를 자유 전파하며,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기에 의한 소음 흡수까지 고려해야 하며, 항공기 소음의 흡음량은 습도와 온도에 의해서 변화

2. 용진군 공항소음대책(인근) 지역 현황

1) 용진군의 일반적 특징

<그림 3> 용진군 관내도



출처: 공항소음포털(검색일: 2023.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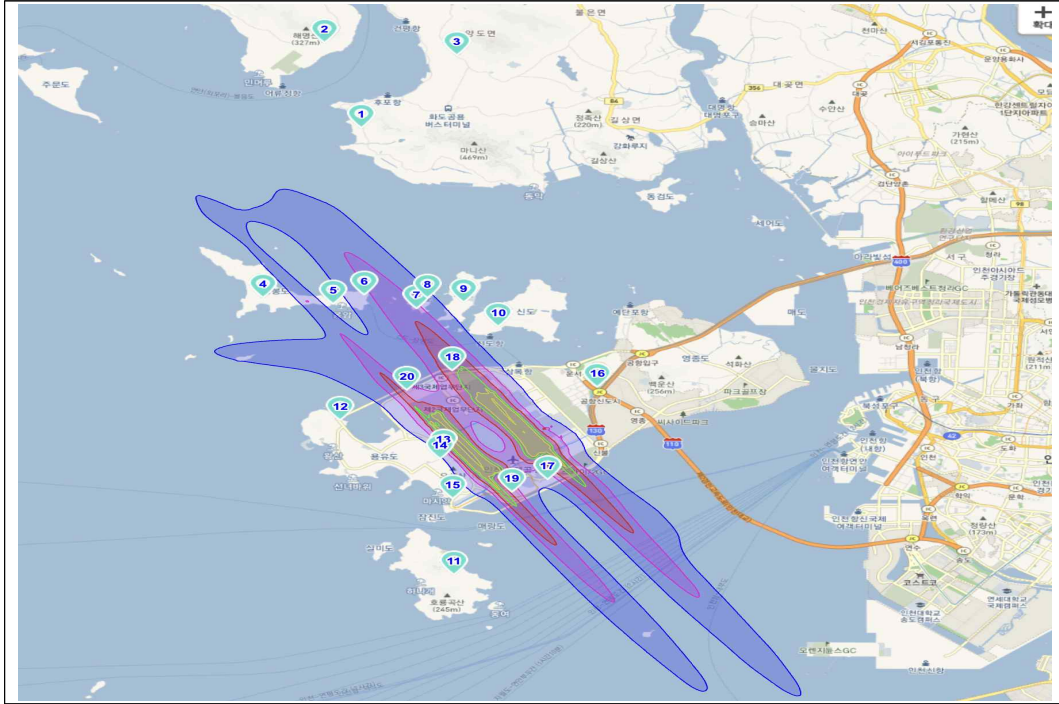
<그림 4> 용진군 장봉군, 신시모도



출처: 용진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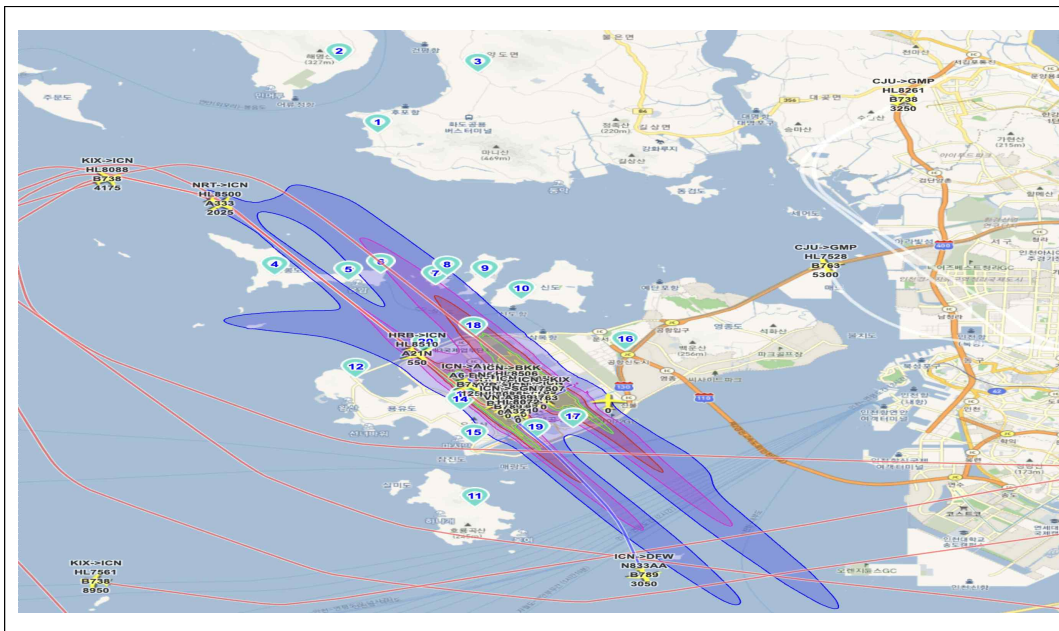
2) 인천공항 소음피해(인근)지역 분포

<그림 5> 인천공항 소음피해(인근) 지역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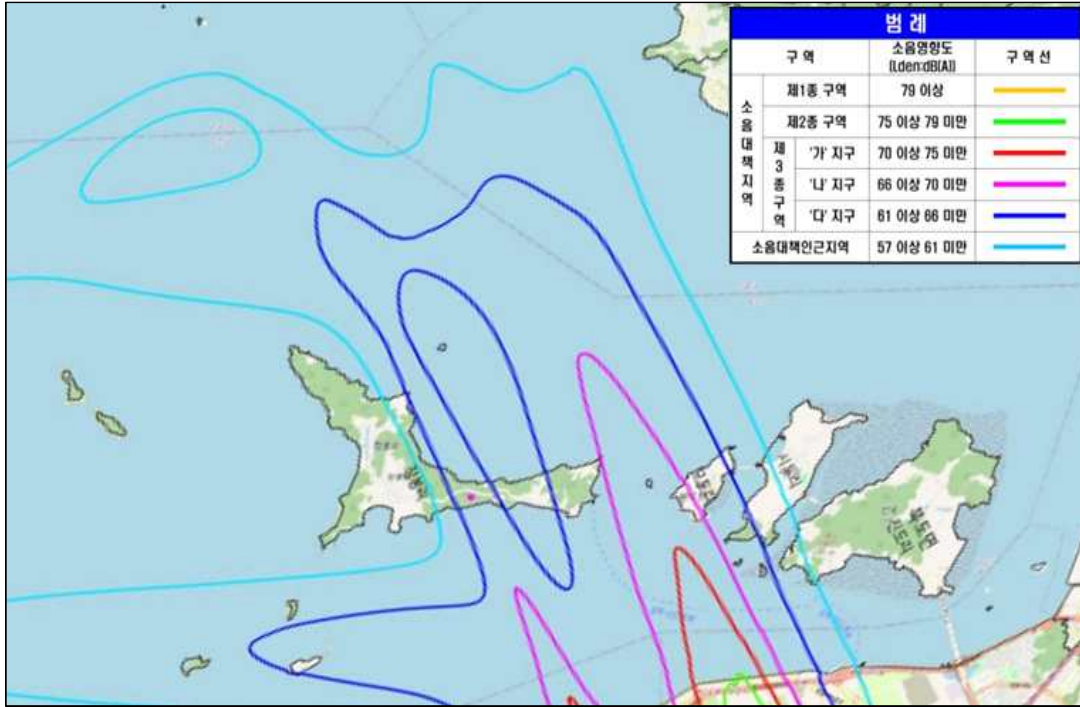
출처: 공항소음포털(검색일: 2023.9.16.)

<그림 6> 인천공항 소음피해(인근) 지역 분포도 및 항공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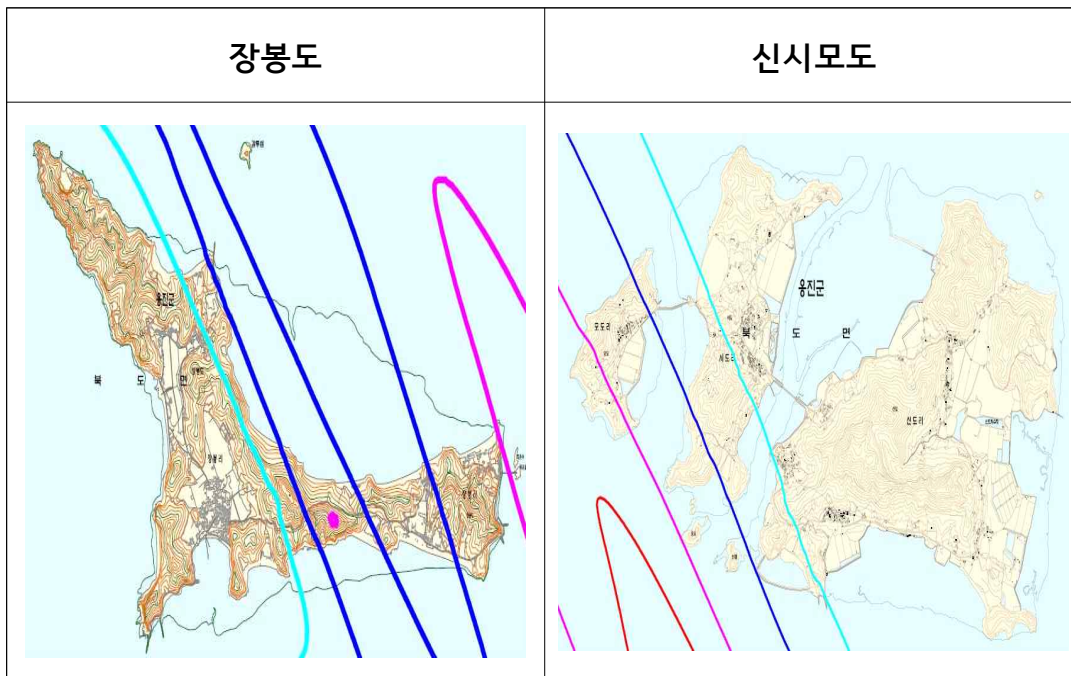
출처: 공항소음포털(검색일: 2023.9.16.)

<그림 7> 옹진군 공항소음대책(인근)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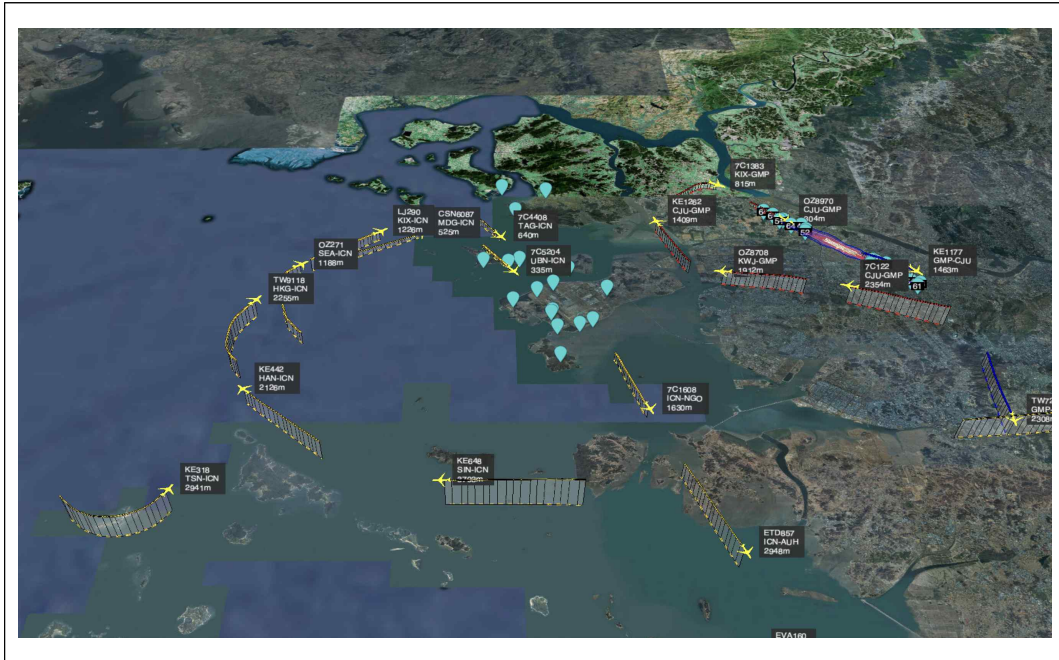
출처: 공항소음포털(검색일: 2023.9.16.)

<그림 8> 장봉도 및 신시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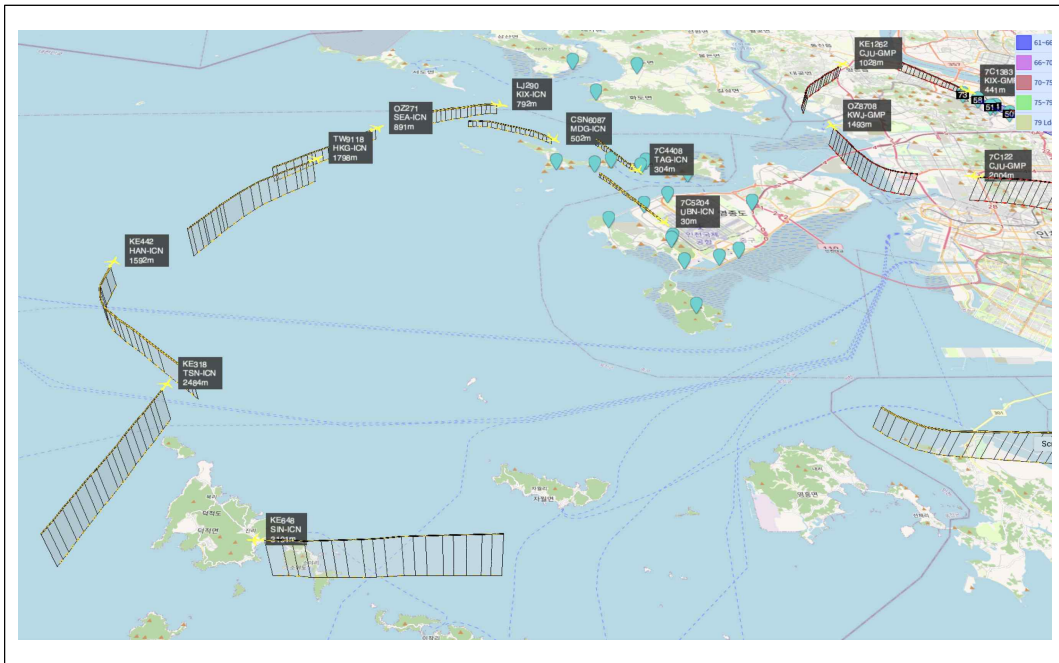
※항공기 소음 변경 고시: 2023.1.1.(서울지방항공청 제2022-130호)

<그림 9>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1



출처: 공항소음포털(검색일: 2023.9.16.)

<그림 10>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2



출처: 공항소음포털(검색일: 2023.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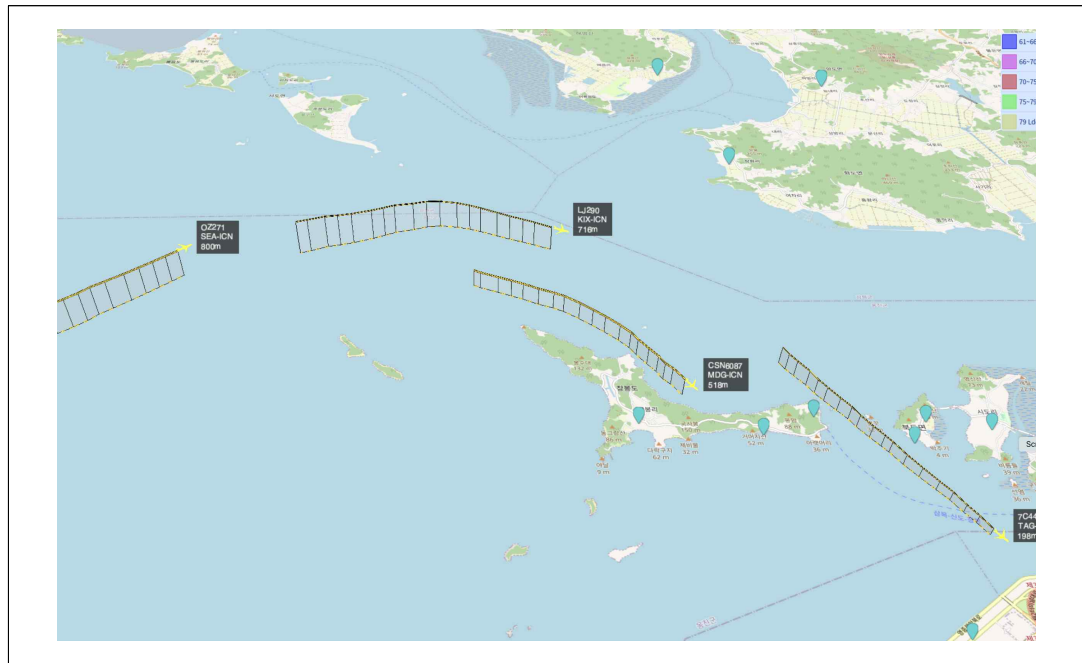
- 인천공항의 이착륙 항로는 설계시점부터 장봉군과 신시도를 경유하게 설계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공항소음이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 사태

<그림 11>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3



출처: 공항소음포털(검색일: 2023.9.16.)

<그림 12>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4



출처: 공항소음포털(검색일: 2023.9.16.)

- 소음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구획 설정에 장봉도가 포함될 수 있으나 법령의 문제를 이유로 소음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지정에 소극적이며, 향후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항공기 운항 현황

<표 2> 인천공항 여객/화물 주간/야간 운항 현황(2013.1~2023.8)

※ (주간) 06:00~22:59 / (야간) 23:00~05:59 기준

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71,224	290,043	305,446	339,673	360,295	387,497	404,104	149,982	131,027	171,253	210,976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3> 인천공항 여객기 주간/야간 운항 현황(2013.1~2023.8)

년도	여객기 운항(편)						여객기 계
	주간			야간			
	도착	출발	소계	도착	출발	소계	
2013년	105,721	115,266	220,987	12,939	3,368	16,307	237,294
2014년	115,044	123,295	238,339	12,519	4,146	16,665	255,004
2015년	122,056	130,568	252,624	13,300	4,669	17,969	270,593
2016년	136,824	146,026	282,850	15,667	6,082	21,749	304,599
2017년	145,431	154,980	300,411	17,156	7,490	24,646	325,057
2018년	154,439	165,212	319,651	21,247	10,244	31,491	351,142
2019년	159,950	170,952	330,902	24,492	13,371	37,863	368,765
2020년	37,545	40,373	77,918	6,586	3,545	10,131	88,049
2021년	15,774	17,129	32,903	3,282	1,904	5,186	38,089
2022년	40,738	44,433	85,171	6,047	2,427	8,474	93,645
2023년	77,779	83,326	161,105	10,701	5,061	15,762	176,867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4> 인천공항화물기 주/야간 운항 현황(2013.1~2023.8)

년도	화물기 운항(편)						화물기 계
	주간			야간			
	도착	출발	소계	도착	출발	소계	
2013년	14,742	11,375	26,117	2,219	5,594	7,813	33,930
2014년	15,020	11,918	26,938	2,493	5,608	8,101	35,039
2015년	14,769	11,290	26,059	2,651	6,143	8,794	34,853
2016년	15,150	10,545	25,695	2,392	6,987	9,379	35,074
2017년	14,963	10,190	25,153	2,659	7,426	10,085	35,238
2018년	15,163	10,088	25,251	2,983	8,121	11,104	36,355
2019년	14,362	9,083	23,445	3,264	8,630	11,894	35,339
2020년	25,091	20,574	45,665	5,794	10,474	16,268	61,933
2021년	36,758	33,115	69,873	9,654	13,411	23,065	92,938
2022년	30,424	27,068	57,492	8,127	11,989	20,116	77,608
2023년	13,767	10,019	23,786	3,224	7,099	10,323	34,109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5> 인천공항 활주로별 운항 현황(2013.1~2023.8)

년도	1활주로	2활주로	3활주로	4활주로	합계
2013년	98,895	91,599	80,730	-	271,224
2014년	99,418	104,545	86,080	-	290,043
2015년	101,251	116,567	87,628	-	305,446
2016년	118,095	122,038	99,540	-	339,673
2017년	124,285	131,308	104,702	-	360,295
2018년	136,762	143,279	107,456	-	387,497
2019년	143,946	146,816	113,342	-	404,104
2020년	63,199	64,116	22,667	-	149,982
2021년	63,831	58,787	164	8,245	131,027
2022년	14,564	43,248	65,656	47,785	171,253
2023년	6,739	56,588	93,174	54,475	210,976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6> 인천공항 운항 노선수(2001~2023.8)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노선수	123	126	135	150	148	169	171	162	177	172	174	176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노선수	182	184	186	186	188	180	189	144	144	152	168	-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재포장공사 관련 주민 설명회는 2022년 11월 단 차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주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이 같은 공사에 대해서 공사 측이 설명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 또한 자료 공개에 있어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소음대책지역 확대에 관한 내용은 옹진군에서 꾸준히 제기 하고 있으니 이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확대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룸.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표 7> 인천공항 활주로 및 재포장 공사 현황

구 분	운영 개시	(1차) 재포장	(2차) 재포장
제1활주로	`01.3	`11.5~`11.11	`22.4~`23.4
제2활주로	`01.3	`12.5~`12.12	`23.8~`25.6 (완료예정)
제3활주로	`08.6	`21.6~`21.12	-
제4활주로	`21.6	-	-

* 활주로 재포장공사(제1,2활주로)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22.11) 1회 시행

□ 인천공항 활주로 공사 추가 계획 여부

-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35호)에서 향후 단계 (4단계 이후) 확장 사업규모(활주로 1본 등)를 제시한 바 있으며, 해당 자료를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 활주로 추가 관련 확정된 세부 사업계획은 없으며, 장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립할 예정입니다.
 -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 추진 계획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임
-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9), 재분영의원실 제출 자료

□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변경 내역

<표 8> 소음대책지역 최초고시 : 2010.11.30(인천국제공항공사, 23.09)

구 분	최초('10.11.30)						
	위치	대상지역	가옥	세대	인구	면적(km ²)	
1종 구역 (79Lden이상)	공항내	-	-	-	-	3.354	
2종 구역 (75~79Lden)	공항내	-	-	-	-	4.260	
3종구역 인근지역	"가"지구(70~75Lden)	공항내	-	-	-	5.045	
	"나"지구(66~70Lden)	공항내	-	-	-	8.204	
	"다"지구(61~66Lden)	공항내외	북도면	10	11	37	9.717
	구역계	공항내외	북도면	10	11	37	22.966
소음대책지역 합계	공항내외	북도면	10	11	37	30.580	
소음대책(인근)지역 합계	공항내외	북도면 옹유농	153	172	323	8.616	
대책 + 인근 지역			163	183	360	39.196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9>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 2016.1.6(인천국제공항공사, 23.09)

구 분	변경('16.1.6)						
	위치	대상지역	가옥	세대	인구	면적(km ²)	
1종 구역 (79Lden이상)	공항내	-	-	-	-	5.943	
2종 구역 (75~79Lden)	공항내	-	-	-	-	4.002	
3종구역 인근지역	"가"지구(70~75Lden)	공항내	-	-	-	6.073	
	"나"지구(66~70Lden)	공항내	-	-	-	9.056	
	"다"지구(61~66Lden)	공항내외	북도면 옹유농	28	28	81	9.057
	구역계	공항내외	북도면 옹유농	28	28	81	24.186
소음대책지역 합계	공항내외	북도면 옹유농	28	28	81	34.131	
소음대책(인근)지역 합계	공항내외	북도면 옹유농	231	246	556	12.511	
대책 + 인근 지역			259	274	631	46.642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10>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 2023.1.1(인천국제공항공사, 23.09)

구 분	현재('23.1.1)						
	위치	대상지역	가옥	세대	인구	면적(km ²)	
1층 구역 (79Lden이상)	공항내	-	-	-	-	5.247	
2층 구역 (75~79Lden)	공항내	-	-	-	-	4.355	
3 층이하 구역	"가"지구(70~75Lden)	공항내	-	-	-	7.304	
	"나"지구(66~70Lden)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7	16	19	11.207
	"다"지구(61~66Lden)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104	658	848	13.683
	구역계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111	674	867	32.194
소음대책지역 합계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111	674	867	41.796	
소음대책(인근)지역 합계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대부동	215	574	1,134	12.842	
대책 + 인근 지역			326	1,248	2,001	54.638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11> 고시 별 소음대책지역 추이(인천국제공항공사, 23.09)

고시기준	구분	최초('10.11.30)					
		위치	대상지역	가옥	세대	인구	면적(km ²)
소음대책지역 합계	2010.11.30	공항내외	북도면	10	11	37	30.580
	2016.01.16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28	28	81	34.131
	2023.01.01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111	674	867	41.796
소음대책(인근) 지역 합계	2010.11.30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153	172	323	8.616
	2016.01.16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231	246	556	12.511
	2023.01.01	공항내외	북도면 양유동 대부동	215	574	1,134	12.842
대책 + 인근 지역	2010.11.30			163	183	360	39.196
	2016.01.16			259	274	631	46.642
	2023.01.01			326	1,248	2,001	54.638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참고: 서울지방항공청의 인천·김포공항 소음대책 관련 답변서

□ 인천공항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현황

○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2-130, 2022.12.30.)

구 분	현재('23.1.1)				
	가옥	세대	인구	면적(k㎡)	
1종 구역 (79Lden이상)	-	-	-	5.247	
2종 구역 (75~79Lden)	-	-	-	4.355	
3종 구역	“가”지구(70~75Lden)	-	-	7.304	
	“나”지구(66~70Lden)	7	16	19	11.207
	“다”지구(61~66Lden)	104	658	848	13.683
	구역계	111	674	867	32.194
소음대책지역 합계	111	674	867	41.796	
소음대책(인근)지역 합계	215	574	1,134	12.842	
대책 + 인근 지역	326	1,248	2,001		

□ 김포공항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현황

○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2-129, 2022.12.30.)

구 분	현재('23.1.1)				
	가옥	세대	인구	면적(k㎡)	
1종 구역 (79Lden이상)	-	-	-	1.07	
2종 구역 (75~79Lden)	-	-	-	1.55	
3종 구역	“가”지구(70~75Lden)	-	-	-	2.47
	“나”지구(66~70Lden)	-	-	-	6.81
	“다”지구(61~66Lden)	70,737	77,958	182,983	15.53
	구역계	70,737	77,958	182,983	24.81
소음대책지역 합계	70,737	77,958	182,983	27.43	
소음대책(인근)지역 합계	138,769	173,287	381,960	32.46	
대책 + 인근 지역	209,506	251,245	564,943	59.89	

□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 추진 계획

- 우리 청에서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5년마다 용역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사항을 고시·관리하고 있음
 - 아울러 별도의 소음대책지역 추가 확대는 법적 규정이 없어 추진계획 없음

2) 항공기소음피해 측정망 및 측정 결과

□ 소음측정망 현황(인천국제공항공사, 2023년 8월 현재)

연번	명칭	위치	설치년도	운영	높이	주거지역
1	강화석모	강화군 삼산면 해명초교	2010	○	건물옥상	교육시설
2	강화양도	강화군 양도면 양도농협	2010	○	건물옥상	○
3	강화화도	강화군 화도면 학생수련원	2001	○	건물옥상	○
4	장봉(북)	옹진군 북도면 장봉3리 인근	2022	○	지면	인근야산
	장봉(서)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	2001	22년	-	-
	장봉(동)	옹진군 북도면 장봉1리	2001	21년 중단	-	-
6	장봉(옹암)	옹진군 북도면 장봉1리	2008	○	건물옥상	○
8	모도(남)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2017	○	건물옥상	상업시설
	모도(북)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2002	22년 중단	-	-
9	시도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2001	○	건물옥상	○
10	신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2001	○	지면	○
11	을왕동	중구 을왕동 배수갑문	2008	○	지면	배수갑문
12	신도시	중구 운서동 12단지옆	2001	○	지면	○
13	남북동1	중구 남북동 이조설령탕 인근	2008	○	지면	○
14	남북동2	중구 남북동 천일기획인근	2017	○	지면	○
15	덕교동	중구 덕교동 덕교노인정	2008	○	지면	○
16	무의도	중구 무의동 무의지소	2001	○	건물옥상	○
17	대부도	안산시 단원구 복지센타	2022	○	지면	체육시설
18	선재도	옹진군 영흥면 노인정	2022	○	건물옥상	○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 측정망 현황 및 현실인식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현실인식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준영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23.09)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장봉서, 동측정국은 토지주 사정, 모도 북은 안전상문제로 운영중단, 옹진군 및 주민과 협의하여 재설치 예정”

○ 한편, 옹진군청이 파악하고 있는 측정망 현황은 ▲7개지역 자동측정기기 설치 후 공항소음포털에 측정결과 개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측정 중 ▲모도(남)은 2017년 7월부터 측정 ▲장봉(동)은 사유지로서 토지주 철거 요청으로 인하여 21년 11월 철거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측에 장봉 2리와 4리에 2개소 추가 설치를 요청 건의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음

□ 측정결과



<표 12> 항공기소음측정기준 변경후, 측정결과

구분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인근지역	
	장봉옹암	모도 남	남북 1	장봉북	남북 2
WECPNL	70	74	74	66	71
Lden	58	62	63	56	59

※ 1. WECPNL(22년)과 Lden(23년 1~8월) 비교

2. 대상 : 소음대책 (WECPNL : 75 이상 / Lden : 61 이상) 및
인근지역 (WECPNL : 70 이상 / Lden : 57 이상) 측정국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13> 인천공항소음피해 측정결과(웅진군청(2023,6) 제출 자료)

년 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강화선모	강화양도	강화화도	장봉옹암	장봉서	장봉옹암	모도북	모도남	시도	신도	을왕	신도시	남북 1	남북 2	덕교	무의	대부동	선채도
20	51	56	50	-	56	74	71	76	64	63	51	42	64	61	46	37	-	-
21	51	55	48	-	56	74	72	77	64	64	40	45	57	52	38	41	-	-
22	49	50	43	66	61	71	69	75	62	62	58	41	73	70	55	41	64	59

<표 14> 인천공항소음피해 측정결과

(단위:22년 까지 WECPNL / 23년부터 Lden)

연도	1	2	3	4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강화석모	강화양도	강화화도	장봉북	장봉서	장봉동	장봉옹암	모도남	모도북	시도	신도	을왕동	신도시	남북1	남북2	덕교동	무의도	대부동	선재도
'01	-	-	59	-	61	69	-	-	-	62	61	-	0	-	-	-	57	-	-
'02	-	-	57	-	59	69	-	-	70	62	61	-	50	-	-	-	56	-	-
'03	-	-	49	-	55	70	-	-	70	61	60	-	0	-	-	-	53	-	-
'04	-	-	43	-	53	70	-	-	70	60	59	-	35	-	-	-	51	-	-
'05	-	-	48	-	55	69	-	-	71	61	59	-	38	-	-	-	51	-	-
'06	-	-	48	-	56	70	-	-	72	62	60	-	41	-	-	-	50	-	-
'07	-	-	45	-	52	70	-	-	72	61	59	-	41	-	-	-	49	-	-
'08	-	-	42	-	55	68	72	-	71	60	60	62	39	51	-	53	48	-	-
'09	-	-	40	-	57	64	71	-	67	54	62	63	0	48	-	49	46	-	-
'10	41	54	36	-	56	64	72	-	69	53	61	63	42	50	-	49	45	-	-
'11	41	53	30	-	53	63	71	-	69	51	57	62	29	43	-	43	36	-	-
'12	40	53	36	-	50	66	72	-	67	48	53	61	30	64	-	41	35	-	-
'13	43	53	38	-	50	65	71	-	66	53	58	63	35	62	-	34	34	-	-
'14	44	53	38	-	50	66	71	-	67	56	57	61	36	63	-	39	39	-	-
'15	48	55	41	-	57	67	72	-	70	61	57	56	35	66	-	43	36	-	-
'16	47	55	41	-	46	66	74	-	71	60	57	38	42	64	-	37	37	-	-
'17	49	55	44	-	45	67	74	76	70	58	58	38	40	63	57	42	35	-	-
'18	47	55	46	-	54	67	74	77	70	62	61	50	42	66	64	41	35	-	-
'19	53	59	52	-	58	70	75	77	72	65	65	56	42	69	67	51	38	-	-
'20	51	56	50	-	56	68	74	76	71	64	63	51	42	64	61	46	37	-	-
'21	51	55	48	-	56	66	74	77	72	64	64	40	45	57	52	38	41	-	-
'22	48	50	42	66	62	-	70	74	69	62	62	59	41	74	71	56	41	64	58
'23	43	39	33	56	-	-	58	62	-	48	48	49	31	63	59	47	32	52	48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 항공기 소음등급별 운행 현(제주지방항공청(2023.9) 제출자료)

- 지방항공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항공기 소음등급별 운행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기 착륙료 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음. 다만, 인천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10조 및 시행규칙 10조에 따른 소음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공항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는 인천공항 인근지역이 주민 생활 권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일 수 있음. 정부는 '18.1.1일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으로 항공사 등이 항공기 소음등급을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폐지한 바 있음

구분		기준연도 (현 고시는 '32년 예상 교통량을 기준으로 함)			
		2022년	2027년	2032년	
국내선	연평균 운항횟수 [대/일]		460.6	515.7	578.2
	항공기 혼합율(%)	ICAO C	93.2	88.0	88.0
		ICAO D	1.9	6.0	6.0
		ICAO E	4.9	6.0	6.0
국제선	연평균 운항횟수 [대/일]		0	55.0	58.1
	항공기 혼합율(%)	ICAO C	-	90.0	90.0
		ICAO D	-	-	-
		ICAO E	-	10.0	10.0
전체	연평균 운항횟수 [대/일]		460.6	570.7	636.3
	항공기 혼합율(%)	ICAO C	93.2	88.2	88.2
		ICAO D	1.9	5.5	5.5
		ICAO E	4.9	6.4	6.4

참고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2021, 국토교통부
 측정기록자료(2021년 9월 18일~2021년 9월 25일)

운항패턴	주간 (07:00~19:00)	야간 (19:00~22:00)	심야 (22:00~07:00)
시간대별 이용률	81%	17.9%	1.1%

참고 : 제주국제공항 항공통계자료(2021년 1월 ~ 2021년 12월), 제주지방항공청

□ 항공기소음등급별 부담금 부과기준(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공항소음법)

소음등급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종별 소음등급
제1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2013년 시행령 개정 후 25)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 제2장과 제3장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소음기준 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제2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2013년 시행령 개정 후 20)	제2장의 2.4.1과 2.5.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제3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2013년 시행령 개정 후 17)	제2장의 2.4.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2장의 2.4.2와 2.5.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제4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2013년 시행령 개정 후 14)	제2장의 2.4.2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3장의 3.4.1과 3.5.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제5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15)에 해당 하는 금액(2013년 시행령 개정 후 10)	제3장의 3.4.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제6등급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10)에 해당 하는 금액(2013년 시행령 개정 후 없음)	제4장의 4.4.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참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2. 26.>

1. 제1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심야시간 운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참고: 국토부 공항소음 관련 대책 보도자료 (2023.3.2.)

공항 소음 줄이고, 피해보상 선택권 넓힌다
- 소음 피해지역 현금 지원, 선제적 소음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

□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 (기존)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 (개선)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

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주민지원사업 개선

-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개선)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3년도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②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

□ 항공기 소음부담금 개편

- (기존)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어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약 84%)이 4·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 (개선)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여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야간 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 개선

- (기존) 현재 야간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 (개선)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또한, 공항 주변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소음대책 선진화 기반 조성

□ 소음정보 제공 활성화

- (기존) 공항 주변에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 (개선)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 공항 주변에 국토부가 4개 공항 55개소, 환경부가 14개 공항 90개소 운영중

□ 소음대책 선진화

- (신규) 또한,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추진배경

- (현황) 「공항소음방지법」 제정(10.9) 이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 만족도가 낮고 소음피해 민원 지속 발생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TV수신료 지원 등(연간 약 500억원)

** 도서관·공원·공동작업장 설치 등 주민 복지·소득 증대사업(연간 약 100억원)

- (필요성) 공항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 주요내용

- ① (수요 맞춤형 지원)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現 시설(방음, 냉방) 설치 → 현금·실비 지원방식 전환, 주민지원사업에 주민 제안방식 도입
-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TV수신료 지원은 주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금 지원(연간 세대당 23만원 + 세대원 1인당 10만원)
 - 방음시설은 주민이 선호제품을 직접 설치 후 실비 지원

- ② (선제적 소음원 관리)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를 위해 소음등급 세분화(5→13등급) 및 소음부담금 편차 확대(10~25%→3~30%)
 - 야간시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야간시간 범위(現 23~06시)를 확대하고, 부담금율(現 소음부담금의 2배)을 합리적으로 조정
 - 지상 소음저감을 위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등 운항방식 개선
- ③ (소음대책 선진화)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신뢰도 향상, 소음대책 연구기능 강화 및 해외 선진공항과 정보교류 확대

* 국토부(4개 공항 55개소), 환경부(14개 공항 90개소) 운영 중

Ⅲ. 인천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현황

1. 공항소음대책 사업 현황

1)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분류 기준과 사업별 지원 내역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분류
-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대책지역(61Lden이상) 및 인근지역(57Lden이상61Lden미만)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
- 공항소음 대책 사업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나뉘어 수행되며, 이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에는 소음대책사업이 그리고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는 주민유대강화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실시
- (인천공항의 경우)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자를 기준으로 다시 나누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유대강화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0%, 주민지원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5%, 인천시비가 12.5%, 그리고 옹진군이 12.5%를 지원

<표 15>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종류

구 분	주요 내용	대상
소음대책사업	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전기료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유대강화사업	주민행사지원, 학업지원금, 장제비 지원 등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소음대책 인근지역

<표 16> 용진군 소음대책사업

법적 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사업 대상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항100%
사업 종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17> 용진군 주민유대강화사업

법적 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사업 대상	소음대책(인근)지역(70웨클 이상)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항100%	
사업 종류	구 분	주요내용
	학업지원금	대학생 학업지원금
	고령자 지원	연말 경로당 등 비품/식자재 지원
	장제비 지원	장례비용 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무료급식사업 지원
	주민행사 지원	지자체·주민단체 주관행사 지원
	주민 소통 및 협력	소음지역 주민 명절선물 지원

<표 18> 용진군 주민지원사업

법적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대상	소음대책(인근)지역(70웨클 이상)		
사업시행	용진군 - 공항 75%, 시비 12.5%, 군12.5%		
주민 복지 사업	사회 복지 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75/100
	체 육 사 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교육 문화 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75/100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소득 증대 사업	공동작업장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	75/100
	공동 영농 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75/100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5/100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2) 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 2017년 공항별 주민지원사업 세부지원 현황²⁾

<표 19> 2017년 공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액

연도	합계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지원실적 (백만원)	10,000	5,980	1,700	2,100	120	100

<표 20> 김포공항 주민지원사업 세부집행 실적

연 번	행정구역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1	양천구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3차)	1,604,250
2		계남체육관 음향환경개선	281,250
3		계남공원 생태통로 보수	15,000
4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신월1,2동)	564,000
5		보안등 LED광원교체	14,000
6		신월3동 주민센터 헬스장 시설개선	435,500
	소 계 (6개 사업)	2,914,000	
7	구로구	고척경로당 화장실 개선	22,500
8		능골산 자락길 조명등 설치공사	150,000
9		학교 환경개선사업	430,867
10		소음피해지역 방범 CCTV 설치	130,000
11		빛 환경개선사업	145,633
	소 계 (5개 사업)	879,000	
12	부천시	고강 다목적 체육관 건립	330,415
13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집 편의시설 환경조성 공사	130,500

2)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인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자료 참조

14		고강본동 주민자치 센터 리모델링	16,380
15		고강본동 주민자치센터 마을카페 리모델링	16,403
16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99,197
17		고리울초 시청각실, 음악실 흡음벽 교체	5,250
18		수주초 장애인 경사로 캐노피 설치 등 2개사업	15,493
19		수주중 운동장 비구방지 펜스설치	17,362
	소 계 (8개 사업)	631,000	
20		풍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3차)	363,960
21		다목적 CCTV 설치	101,100
22	김포시	인도 경계석 교체공사	151,650
23		농기계 공동운영 사업	394,290
	소 계 (4개 사업)	1,010,000	
24		체육시설 설치사업	225,000
25	계양구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79,689
26		농업기반시설 정비	198,311
	소 계 (3개 사업)	503,000	
27	강서구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민편의시설 개선	28,000
	소 계 (1개 사업)	28,000	
	합 계 (27개사업)	5,960,000	

<표 21> 김해공항 주민지원사업 세부집행 실적

연 번	행정 구역	사업명	사업비 (천원)
1	강서구	평강대리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	13,500
2		평강대리마을회관 복지문화시설 지원사업	10,313
3		평강사리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추가)	13,250

4	평강사리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사업	11,250
5	송백마을회관 문화시설 확충사업	17,853
6	월포마을 경로당 복지시설 지원사업	21,450
7	순서마을회관 복지시설 지원사업	26,242
8	강동동 3통 경로당 복지시설 지원사업	7,500
9	강동동 3통 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사업	16,500
10	강동동 6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11	강동동 11통 마을회관 마당 포장공사	30,750
12	시안마을회관 앞마당 포장공사	7,500
13	중사도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사업	16,500
14	순서마을 체육시설 설치 사업	8,043
15	평강대리마을 안길 포장공사	11,050
16	평강사리마을 우수관로 확장공사	32,500
17	염막마을 용수로 복개공사	9,750
18	송백마을 수로 범면공사	39,000
19	정관마을 버스승강장 시설공사	2,256
20	신평마을 안길 확장공사	13,000
21	월포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공사	44,850
22	강동동 2통 하수구 정비공사	17,550
23	강동동 3통 산책로 주변조성사업	9,425
24	강동동 6통 안길 포장 및 배수로 공사	35,100
25	강동동 11통 안길 포장 및 하수구 정비공사	42,900
26	시안마을 돌레길 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55,822
27	중사도마을 돌레길 정비사업	5,363
28	평강대리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10,725
29	칠점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10,010
30	동협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14,300
31	순서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6,793
32	중사도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12,870
33	송백마을 방범CCTV 설치사업	14,300

34		정관마을 방범CCTV 설치사업	3,204
35		강동동 3통 방범CCTV 설치사업	17,517
36		강동동 4통 방범CCTV 설치사업	8,580
37		시만마을 방범CCTV 설치사업	12,935
38	강서구	평강사리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7,500
39		작지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37,500
40		동협마을 농로포장공사	24,750
41		동협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30,000
42		동협마을 농업용수로 U형 개거사업	19,866
43		동협 공동육묘장보수 및 육묘상자 지원사업	14,715
44		송백마을 농로배수로 암거 및 포장공사	19,050
45		강동동 7통 농로확장공사	56,250
46		식만마을 농로확장공사	60,000
47		중사도마을 농수로 복개공사	23,250
48		강서구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	188,661
49		강서구 공동농기계 지원사업	403,007
50			소 계
1	김해시	분도마을회관 환경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57,700
2		선암마을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	9,455
3		부원공원 야외운동시설 설치사업	6,750
4		수영마을회관 보수공사	2,145
5		분도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8,946
6		분도마을 방범용CCTV 설치사업	4,875
7		전산마을 방범용CCTV 설치사업	6,500
8		수영마을 농업용 용수시설 개선	7,500
9		분도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50,050
10		선암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4,875
11		장어마을 입구 홍보용간판 설치	11,204
		소계	877,049
	합 계	1,700,000	

3)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지역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일본의 경우, 학교·병원 등의 방음공사,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손상된 냉방기기 수리공사의 경우 70WECPNL 이상인 지역에 보조하고 있음. ▲국내의 공동이용시설 사업은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대상 가옥이 적어 사업발굴이 어렵고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사업 시행이 곤란했으며, 소음피해지역내 사유지가 없을 경우 부지 미확보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지리적으로 공향소음대책지역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역은 일본의 경우를 참작하여 소음영향도 70WECPNL 이상 75WECPNL 미만인 지역으로 규정함.
- 법 제18조 제3항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피해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른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게 됨.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사업의 명칭·목적 및 개요, 세부사업계획(사업규모·사업내용·사업시행기간·사업장소·사업효과·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

지원계획,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시기 포함), 사업별 투자계획,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 두 법률의 시행령을 참고하여,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사업별 투자계획,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사업시행의 기간,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제12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밖의 일정범위의 지역이라 함은 소음영향도 70WECPNL 이상 75WECPNL 미만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사업별 투자계획
4.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5. 사업시행의 기간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 법 제18조 제7항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됨.
-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변경 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도록 함. ▲그러나 6월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의 세부사업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책임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일관성 있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의 감독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사업비의 5% 이내의 증감 사유로 제한하여 규정함.

제13조(지원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7항 단서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사업비의 5%이내의 증감 사유로 인한 변경되는 사항을 말한다.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등
- 법 제19조 제1항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함.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동조 제3항은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는 주민지원사업을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함.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

액을 결정·배분함.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 사업비로 함. 이 경우 일반지원비 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지자체의 주민지원사업의 남발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비는 각 사업별로 50%~7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일본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하여 사업별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액 또는 사업비의 5%~80%까지 보조하고 있음.
- 개별적인 소음대책사업과 달리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공항주변지역 소음대책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공항의 운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함.

제14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③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공항의 건설 및 운용 기간 동안으로 한다.

<표 22>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

구분	사업용	지원내용	지원비율
소득 증대 사업	농림수산업 시설	공동영농 등을 위한 농로, 임도, 농업용 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65/100
	상공업 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	75/100
	기타 소득증대사업	그 밖에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0/100
주민 복지 사업	의료 시설	보건진료소	75/100
	사회복지 시설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노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75/100
	도로 시설	소규모 농업용 도로 등 도로 관련시설	75/100
	교육·문화 사업	교육기자재·학교급식시설 지원, 장학금 지급, 도서관 및 교육·문화 관련시설	75/100
	운동·오락 시설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운동·오락 관련시설	75/100
	공공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75/100
	홍보사업	지역 홍보센터, 환경교육관 설치 등	75/100
기타 주민복지사업	그 밖에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0/100	

- 주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및 주민복지사업과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사업을 포함한다.
2. 소득증대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당해년도 소음피해 방지대책 사업비를 제외한 재원 및 별표 00의 지원비율에 따른 시설관리자의 지원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자 및 소음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지원비율”은 대상 시설의 건축비(설치비)를 기준 한다.
4. 대상 시설의 증·개축시에도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시행자

법 제21조 제1항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
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
로 시행하는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
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5조(시행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
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
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2.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 용진군의 소음피해대책사업 및 추진계획('11~'25)

<표 23> 중기 계획별 사업비 총괄 내역

구분	1차 중기계획 ('11~'15)	2차 중기계획 ('16~'20)	3차 중기계획 ('21~'25)	비고
용진군	14억	66억	66억	시·군비 포함

<표 24> 중기 계획별 사업비 총괄 내역3차 중기계획 사업비(용진군_예상)

사업종류	5개년 사업비(예상)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66억원)	4.7억원	6억원	11.7억원	21억원	22.6억원
주민복지사업	0.7억	-	-	15억원	15.4억원
소득증대사업	4억원	6억원	11.7억원	6억원	7.2억원

<표 25> 2차중기 계획 사업비 세부 내역(2016~2020년)

구분	총 계 (소계 + 용지비)					
	소 계	사업비			용지비 (군 100%)	
		군	시	공항		
총액	9,730.1 (100%)	7,558.1 (77.68%)	1,348.7 (13.86%)	593.3 (6.1%)	5,616.1 (57.72%)	2,172 (22.32%)

- 문제점
- 국내 유일 24시간 운항하는 항공기 특성으로 인한 상시 소음발생으로 북도면 전체 주민피해 심각
-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시 용지비는 지원금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 추진시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가진(8%) 군 재정 부담 가중 및 신속한 사업집행에 어려움 발생
-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로 인한 지원 제외 대상 가구 발

생으로 지원가구와 지원제외 가구 간 갈등 초래

- 향후계획
- 공항소음방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항공청, 인천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과 적극적인 업무협약의 및 지속적 건의
- 지원사업 확대 및 군 재정부담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비에 용지비 포함 건의(시행령 제12조제4항 개정)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을 65~75%에서 100%로 확대 건의(법 제 19조제2항 개정)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 특성 감안 주민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 지역과 형평성 고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 옹진군은 법률 개정 이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소음대책인 근지역 외 주민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

IV. 주민요구사항

1.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법적 근거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 법 제22조 제1항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공항주변지역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조 제2항은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항공법 제109조의2는 국토해양부장관·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가 자문을 얻기 위해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2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은 항공법 시행령 제42조의2를 반영하여 규정함. ▲다만, 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항공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5인 보다 많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도록 함.

제16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음대책 사업을 시행하는 공항별로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항공청 소속공무원

2.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의 소속직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4. 그 밖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금의 사용

- 법 제23조 제1항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의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및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도록 규정함.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업은 조사·연구 및 주민유대 강화와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함.

제17조(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2. 기부토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3. 소음피해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4.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부대경비
5.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6. 항공기 소음대책 홍보활동
7. 소음피해지역 주민유대강화 활동(결식노인 급식비, 주민행사비 지원 등)
8. 항공기 소음대책과 관련된 조사 연구비
9. 소음피해지역 방문자센터(주민상담센터, 콜센터) 설치 운영

2. 용진군 주민의 요구사항

1. 소음피해지역 확대 지정
2.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추가 설치
3. 항공기 소음측정기준 변경
4.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사업비 지원
5. 정기적인 주민 건강검진 및 정신과 치료 지원
6. 환경오염에 따른 재산권 피해 보상 대책 마련
8. 현행 편중된 피해보상 개선
9. 상시적 공항소음피해조사위원회 설치
10. 주민요구사항 회신 내용(2022.12 현재)

1. 소음피해지역 확대 지정

1) 섬 또는 면단위 소음피해지역 지정

- 동일한 생활권인 섬 지역으로 이루어진 북도면의 특성을 감안하여, 북도면 전체가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음피해 지원 필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2) 3,4 활주로 운영에 따른 장봉도 주민 피해 심각

- 활주로 재포장 공사 계획 및 이용 실태

<표 26> 활주로 재포장 공사 연차별 계획

재포장 계획	3활주로('21.6~'22.2)	1활주로('22.4~'23.8)	2활주로('23.8~'25.3)
4단계 사업	4활주로 운영('21.6)	직각유도로 신설	고속탈출 유도로 신설
활주로 운영	운영개시('22.3)	운영개시('23.8 예정)	운영개시('25.6 예정)
비 고	공사 완료	공정율 80%	시기 미도래

- 현재 1활주로 재포장 공사중(폐쇄)인 관계로 3활주로 이륙 이용 빈도 많음, 이로인해 장봉 2리~4리 주민들의 공항소음에 대한 불만이 많음. 또한, 2활주로 재포장 공사 후 운영 재개 시점인 ‘25.6월까지 소음피해 민원 발생 예상

구분	1활주로	2활주로	3활주로	4활주로
이·착륙 주이용	이륙	착륙	이륙	착륙
활주로 방향	장봉 1리, 모도리(소음대책·인근지역)		장봉 2리~4리(소음대책·인근 제외지역)	
활주로 이용 현황 사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북서풍 - 가을~봄/남동풍 - 여름)에 따라 이·착륙 방향이 다름. · 남동풍 시 착륙 때 장봉 2리~4리 지역 소음 피해 토로(주민) 			

2) 항공기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 지원비율 상향 조정 및 지원사업 확대
- 용진군의 열악한 재정(재정자립도 8%) 상황을 감안하여, 공항지원비율 상향 및 용지비도 지원 가능하도록 법 개정, 현행 65%~75% 지원비율을 인천국제공항공사 100%로 상향(법 제19조제2항 개정)
- 지원사업 확대 및 군 재정부담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비에 용지비 포함 건의(시행령 제12조제4항 개정)

2.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추가 설치

- 1) 주민의 실질적 피해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괴리감, 불합리성

3. 항공기 소음측정기준 변경

- 1) 엘디이엔(Lden) 단위에서는 측정기준 미달
- 2) 주민이 실제 겪고 있는 소음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측정기준 마련

4.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사업비 지원

- 1)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연도교 공사비 지원
- 2) 박완수 前 사장 재임 시절 연도교 지원 약속한 바 있음

5. 정기적인 주민 건강검진 및 정신과 치료 지원

- 1) 주민 고통 치료를 통한 건강권 보장

6. 환경오염에 따른 재산권 피해 보상 대책 마련

- 1) 항공기 분진, 잔류 항공류 분사, 환경 오염, 모래유실 등

8. 현행 편중된 피해보상 개선

- 1) 현행 중구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있는 피해보상 개선

9. 상시적 공항소음피해조사위원회 설치

- 1) 공항소음위원회의 상사적 운영을 위한 설치

10. 주민요구사항 회신 내용(2022.12 현재)

참고 : 제주지방항공청의 답변(2023.9)

※ 작성자 :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행정서기 이수진 ☎ 064-797-1729)

- 항공기 분진 및 잔류 항공류 분사 실태(위치, 횟수, 규모)

☞ 한국공항공사 소관사항입니다.

□ 인천국제공항사가 파악한 주민민원(2023.8월 현재)

○ 주요 민원 내용

- 장봉도지역 이주대책요청('12년): 1건
- 가설건축물 항공소음대책 요구(7회 반복, 14,15년): 7건
- 건설사업관련 면담요청 중 항공기소음 대책 문의포함(14년): 1건
- 옹진군 북도면 지역 교량건설 요구('14년): 1건
-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서 이첩된 민원)
- 상업시설 항공기소음대책 요구('15년): 1건
- 항공기소음대책시설 조속한 완료 요구('16년): 1건
- 폐교 관사 항공기소음대책 요구('17년): 1건
- 업무용시설 전기료지원 요구('18년) : 1건
- 청라지역 항공기소음 무문의('18년): 1건
- 남북동 공항구역 편입, 토지수용('18년) : 1건
- 장봉2리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영업방해('22년): 2건
- 용유동 항공기소음대책에 제도개선 건의('22년) : 1건
- 장봉도 소음대책, 연도교 건설, 건강검진 요구('23년): 1건
- 소음대책 및 활주로건설 현황자료 요구('23년) : 1건

<표 27> 항공기소음 서면민원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	0	1	0	7	3	1	1	3	0	0	0	3	2

- ※ 1. 인천공항은 2010년 최초고시 이후 소음대책사업 시행
- 2. 23년 : 8월까지 현황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공항청 회신내용³⁾

- 자료요청 내역 및 관련 회신 내용
- 활주로 공사 이후 장봉도 운항기록 공개 요청 ☞ (서항청) 기밀사항 공개 불가
- 항공기 소음 등급별 운항 현황(2022년) ☞ (인천공항공사)정보 부존재(별도 관리 안한다는 답변)
- 소음측정망 추가 설치 요청
- 장봉 2,4리 각 1개소 추가 설치 ☞ (인천공항) 옹진군과 협의하여 증설할 계획

- 거주지 외 어업, 생업 지역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 옹진군의 날가지, 아염도, 사염도는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해당 지역은 이곳 거주 주민들의 어업 활동 구역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소음대책(인근)지역 외 주민(장봉 2,3,4리)의 생활 터전이기도 함. 이에 따라 지원요청함. ☞ (서항청, 인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섬)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중 소음대책(인근)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주민에 대한 개별지원은 법적 제한으로 어려운 실정
-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
- 박상은 前 국회의원(2008.~2015.), 정일영 前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2016.~2019.) 재임 시절 사업비 300억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회공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 (인천공항)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은 공익사업 목적 사업범위를 벗어나 지원 불가

3) 옹진군청 자료 제공(2023.6)

- 활주로 공사 중 소음지역 고시
- 활주로 공사기간 중 항로가 변경되어 장봉2,3,4리 주민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중(‘25.3월까지) 소음대책 지역으로 고시되어 주민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인천공항 및 서항청) 활주로 재포장 공사는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순차적으로 시행 중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10년 내 가장 높은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소음영향도를 산정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섬 또는 면 단위로 소음대책지역 고시를 위한 법 개정 요구
- 북도면의 경우, 공항소음을 동일하게 겪고 있지만, 소음대책 지원 지역과 그 외 지역이 구분되어 지역간 갈등 발생,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북도면 전체가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2022.12.16. 배준영 국회의원 방문시 건의)

※ 법 개정 요구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소음대책지역 ⇒ 섬 또는 면 단위 지정
- 지원비율: 공항 65~75% ⇒ 공항 100%
- 지원항목: 용지비(신설)

- 그 외 <소음법> 개정 이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적으로 소음대책인근 지역 외 주민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청

3.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전국 현황

□ 인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주체별 역할

- (주체별 역할) ▲(국토부)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법7조) ▲(서항청) 소음대책지역 고시(법5조), 공사 사업계획 승인(법8조) ▲(공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법24조 등), 소음대책사업, 유대강화사업 시행(법8조, 23조), 주민지원사업 지원(법18조) ▲(지자체) 주민지원사업 시행(법18조), 건축물 제한(법6조)

□ 인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기능 및 구성

- (기능)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구성) 공사(2), 서항청(2), 지자체(2), 주민(4), 전문가(2), 간사(1) ▲(회의 주기) 정기 반기 1회(임시 필요시)

<표 28> 인천 공합소음대책위원회 구성⁴⁾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전형옥	당 연 직
부위원장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장	원근영	당 연 직
위 원 (옹진군)	인천 옹진군 도서개발과	이성배	당 연 직
	지역 주민 (모도리)	최광선	옹진군 추천
	지역 주민 (장봉리)	고영일	옹진군 추천 (연임)
위 원 (중 구)	인천 중구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당 연 직
	지역 주민 (용유동)	고광태	중구 추천 (연임)
	지역 주민 (용유동)	이은경	중구 추천
위 원 (전문가)	연세대학교 교수	박상규	전문가 (연임)
	YOUINLAW 법률사무소	유인호	전문가
위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공항처장	조규혁	당 연 직
위 원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담당	강동관	당 연 직
간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장	조정호	당 연 직

4) 옹진군청 자료 제공(2023.6)

<그림 13> 정부소음대책 조직도



<그림 14> 인천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그림 15> 김포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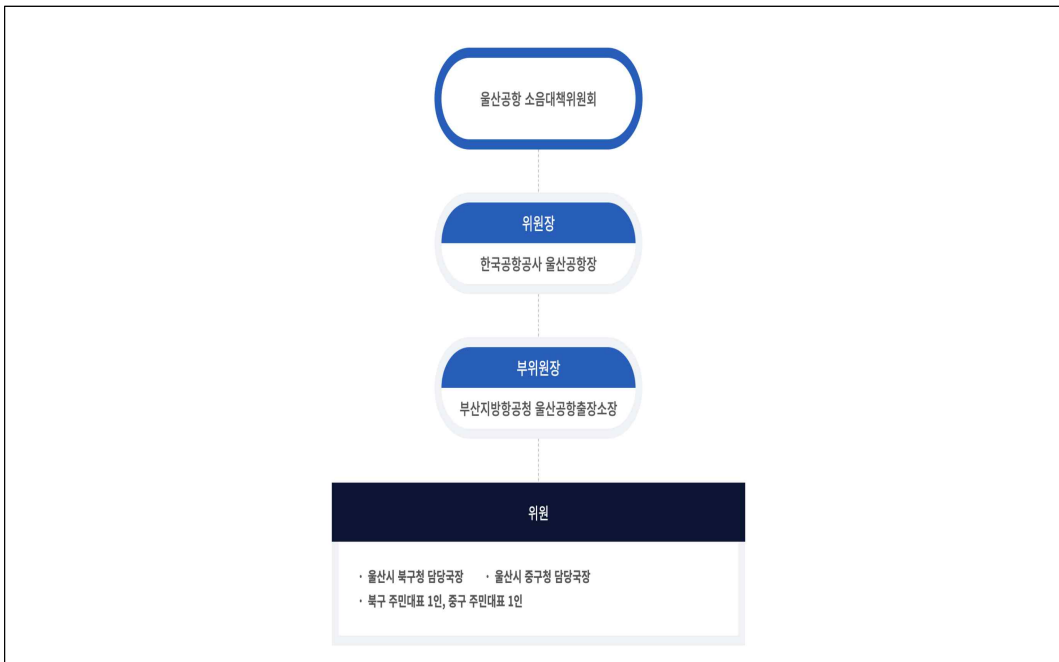
<그림 16> 김해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그림 17> 제주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그림 18> 울산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그림 19> 여수공항 소음대책 조직도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음대책 추진 실적

<표 29>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1차(11~15년)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소음대책	161	1	1	1	1	165
- TV수신료	1	1	1	1	1	5
- 냉방시설	22					22
- 방음시설	138					138
- 전기료지원						0
주민지원		250	250	250	100	850
- 주민복지사업		250		125	35	410
- 소득증대사업			250	125	65	440
- 지자체조례						0
유대강화					72	72
기타	809		347	195		1,351
총합계	970	251	598	446	173	2,438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30>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2차(16~20년)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소음대책	179	132	50	55	56	472
- TV수신료	1	1	1	1	1	5
- 냉방시설	31	15				46
- 방음시설	143	99	10	2		254
- 전기료지원	4	17	39	52	55	167
주민지원	765	541	593	8,103	965	10,967
- 주민복지사업	375	541	525	6,235	22	7,698
- 소득증대사업	390			1,193	658	2,241
- 지자체조례			68	675	285	1,028
유대강화	191	259	300	340	300	1,390
기타	126		512		176	814
총합계	1,261	932	1,455	8,498	1,497	13,643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31>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3차(21~23년)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계획	합계
소음대책	66	73	197	336
- TV수신료	1		1	2
- 냉방시설				0
- 방음시설			88	88
- 전기료지원	65	73	108	246
주민지원	473	680	1,253	2,406
- 주민복지사업	53			53
- 소득증대사업			68	68
- 지자체조례	420	680	1,185	2,285
유대강화	300	258	350	908
기타				0
총합계	839	1011	1,800	3,650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표 32>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1/2/3차 소음대책 등 추진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1차 실적 (11~15년)	2차 실적 (16~20년)	3차 실적 (21~23년)	비고
소음대책사업	165	472	336	
주민지원사업	850	10,967	2,406	
유대강화 등	1,423	2,204	908	
합계	2,438	13,643	3,650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2023.09), 배준영의원실 제출자료

-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 최초고시 이후 줄곧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주민과 소통에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공사측의 소음대책 사업의 추진은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인지 여부가 불투명함. 더불어 현재 장봉도 주민대책위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사측의 주민대책 사업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보기 어려움(참고: 장봉도 주민대책위 회의록 참고)

□ 옹진군 공항소음피해연구의 추후 과제

- 공항소음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도출
 - 공항소음피해 지원사업 및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도출
 - 소음피해(인근)지역의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도출
 - 소음측정망 위치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방향 도출
 - 소음피해 주장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도출
- 공항소음이 유발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실질적 파악
 -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과 지역 주민의 소득 추이 간 인과관계 파악
 -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과 지역 주민 건강 및 생활 환경 간 인과관계 파악
- 소통과 협의에 의한 공항소음피해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도출
 - 주민대책위/지자체/공항공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도출
 - 옹진군 공항소음피해 개선을 위한 지역대책위 조직의 개선 방향 도출

부록

□ 장봉도 항공기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활동

○ 개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장봉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수면권, 어업권 등의 생존권 피해로 인하여 장봉도 주민 일원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발족된 장봉도 항공기소음피해 대책 위원회 경과 및 진행사항임

○ 경과

2023.02.13	장봉도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발족
2023.02.14	1차 집회예비모임(마을회관150명)
2023.02.15	1차 장봉도항공기소음피해대책요구 집회 * 장소: 인천국제공항공사청사 앞 10:00~16:00 * 참여인원: 장봉도 주민 등180명 *요구사항: 1. 장봉도 전지역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해줄 것 2. 야간 운행금지로 수면권을 보장 할 것
2023.03.03	인천시의원(신영희의원) 간담회 *장소: 장봉어촌계사무실(10:00) * 참석인원: 신영희의원, 정연희 어촌계장, 대책위 집행부 *내용: 전국항공기소음피해협의회 활동예정에 따른 자료 요청시 협조 당부 * 요구사항 : 1. 항공기소음피해로인한생존권을보장하라 2. 소음측정자료요청
2023.03.07	장봉도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요청 (옹진군수면 담) *장소: 장봉출장소회의실 *대상: 장봉도 주민

	* 내 용: 기존설치 2대(공항공사), 설치예정 3대(옹진군), 설치요구계획 3대(공항공사)
2023.03.09	2차 장봉도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요구집회 *장소: 인천공항공사청사 *참석인원: 장봉도 주민 등200여명 *요구사항: 1. 장봉도 전 지역을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 2. 야간운행중지요구 3. 생존권보장을 위한 피해보상 요구
2023.03.31	배준영 의원 간담회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포럼 참석 *장소: 배준영의원사무실 *참석인원: 위원장 등3명(장봉) 김정열, (신도모도) 이근덕 * 내용: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요구사항전달
2023.05.30	주민총회 개최 * 장소: 장봉출장소2층회의실(10:00) * 참석인원: 주민115명 *내용: 1. 홍석인 대책위원장 선출 (결과: 이정택 위원장 선출) 2. 장봉도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진행사항 보고
2023.07.05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참석 *장소: 옹진군청 효심관 *주최: 인천광역시시 섬해양정책과 *참석인원: 시도로과, 강화군건설과, 옹진군 도시개발과, 장봉도주민등65명 *내용: 모도장봉도간연육교 건설시기 연기(25년~30년)
2023.07.27	신영희의원 간담회 *장소: 장봉도 다목적회관 2층 (청장년회사무실09:30) * 참석인원 : 위원장 11명 *내용: 1. 신영희시의원 추진현황 설명 2. 인천광역시공항소음대책종합지원센터설립 촉구 3. 시의원, 군의원등소음피해관련 소통 및장봉도 주민의견정리필요함
2023.08.04	인천시청항공과 면담 * 장소: 인천시청항공과(14:00)

	<p>* 참석인원 : 위원장 이정택</p> <p>* 내용 : 장봉도 소음피해 관련 건의사항 전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간운행금지로 수면권 생활권 보장 2. 소음피해대책지역을'장봉도 섬 전체지역으로 확대요청 3. 5년 단위 인천공항1.2.3.4활주로운행계획 4. 장봉~모도간연도교조기추진 5. 소음피해주민을위한전용기금마련
2023.08.17	<p>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 관리팀 간담회</p> <p>*장소: 장봉출장소2층회의실</p> <p>*참석인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장(송재백) 등3명, 장봉도소음피해대책위원장 등 11명</p> <p>*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피해지역주민의 상생방안마련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 2.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책 마련

□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3단 비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4호, 2021. 5. 18.,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16. 3. 29.,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 	<p style="text-align: center;">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35호, 2022. 12. 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 이상 75 미만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p>	<p style="text-align: center;">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1. 29.> ② 삭제 <2021. 11. 29.> ③ 삭제 <2021. 11. 29.>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p> <p>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p> <p>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p> <p>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p>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p> <p>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p> <p>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 5. 18.></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8.></p> <p>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p> <p>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p>	<p>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9.></p> <p>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 11. 29.></p> <p>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 [LdendB(A)] 70 이상 75 미만</p> <p>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 [LdendB(A)] 66 이상 70 미만</p> <p>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 [LdendB(A)] 61 이상 66 미만</p> <p>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31.></p>	<p>⑥ 삭제 <2021. 11. 16.></p> <p>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고시할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8.></p> <p>⑧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21. 5. 18.></p> <p>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21. 5. 18.></p> <p>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p>	<p>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21. 5. 17.></p> <p>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 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p>② 법 제8조제2항에서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7. 18.></p> <p>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31.></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4. 18.></p> <p>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p>[시행일: 2023. 10. 19.] 제5조</p> <p>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p>	<p>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12. 26., 2021. 5. 18.></p> <p>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p> <p>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1. 16.></p> <p>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p>	<p>2016. 6. 30., 2017. 7. 18., 2021. 5. 17., 2021.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방음시설: 설치 후 대상 시설물의 실내에서 측정된 가중등가소음도[Lden dB(A)]가 48 이하일 것 나. 냉방시설: 설치 시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할 것 다. 그 밖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것 2.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별로 월 500만원. 다만,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유치원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보아 학교에 대해서만 월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 제5조제1항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은 세대별로 월 5만원 다.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p>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1. 시설물의 용도변경</p> <p>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1. 시설물의 용도변경</p> <p>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6. 14.]</p> <p>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7. 7. 17., 2021. 5. 18.></p> <p>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p> <p>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p> <p>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와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p> <p>5. 냉방시설 전기료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시설</p>	<p>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p> <p>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p> <p>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p> <p>제6조의2(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①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7. 18.]</p> <p>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개정 2016. 6. 30.></p> <p>1. 항공기 이륙·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p> <p>2. 향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p> <p>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p> <p>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일: 2023. 10. 19.] 제6조</p> <p>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p> <p>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31.></p> <p>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17., 2018. 8. 14., 2020. 4. 7., 2020. 6. 9.></p>	<p>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 6. 14.></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p>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 7. 18.></p> <p>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30.]</p> <p>제8조(토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p> <p>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p> <p>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p> <p>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 관리자로 한정한다)</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p> <p>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p> <p>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p> <p>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p> <p>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p> <p>5. 삭제 <2015. 12. 31.></p> <p>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p> <p>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20. 6. 9.></p> <p>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p> <p>1. 방음시설 설치사업</p> <p>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p> <p>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p> <p>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p>	<p>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p> <p>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6. 14.></p> <p>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14.></p> <p>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6. 14., 2016. 8. 31., 2022. 1. 21.></p> <p>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손실보</p>	<p>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8.></p> <p>제10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p> <p>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p> <p>②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서 계산된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7. 12. 28.></p> <p>1. 제1등급 : 100EPNdB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음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항공기</p> <p>2. 제2등급 : 97EPNdB을 초과하고 100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p> <p>3. 제3등급 : 94EPNdB을 초과하고 97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p> <p>4. 제4등급 : 91EPNdB을 초과하고 94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p> <p>5. 제5등급 : 91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p> <p>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를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하 “항공기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p>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17., 2018. 8. 14., 2020. 4. 7., 2020. 6. 9., 2023. 8.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p>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 <2015. 12. 31.>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p>	<p>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22. 1. 21.></p> <p>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p> <p>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 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p> <p>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할 후 이를 매수</p>	<p>에는 비행교범, 그 밖에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17. 12. 28.></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7. 12. 28.]</p> <p>제11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p> <p>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해당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위반으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p>② 제1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외국화폐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외국화폐의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되, 환율 적용 기준일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p> <p>제11조의2(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20. 6. 9.></p> <p>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방방시설 설치사업 <p>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p>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2024. 2. 17.] 제8조</p> <p>제9조(소음저감운행 의무 등) 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p> <p>②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 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21.></p> <p>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p>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1.></p> <p>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p>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p>	<p>의견청취)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중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야비행 통제시간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의 항공기 비행 경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항별로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상항공기의 운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본조신설 2021. 11. 29.]</p> <p>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 7. 22., 2013. 3. 23., 2016. 6. 30., 2017. 12. 28.></p> <p>제13조(증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p> <p>제11조(손실보상) 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p> <p>②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p> <p>[제목개정 2015. 12. 31.]</p>	<p>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한다.</p> <p>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6.></p> <p>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p> <p>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p>	<p>부칙 <제1118호, 2022. 3. 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p> <p>③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p> <p>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20. 6. 9.></p> <p>[제목개정 2020. 6. 9.]</p> <p>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p>	<p>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2. 26.></p> <p>1. 제1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p> <p>2. 제2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p> <p>3. 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p> <p>4.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p> <p>5.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p> <p>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p> <p>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p> <p>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p> <p>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 중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p>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p>	<p>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1.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징수되지 아니한 경우</p> <p>2. 제4항에 따른 심야시간 운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사업의 목적 및 개요</p> <p>2. 주민복지사업의 내용</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범위에서 기부토지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관리할 수 있다.</p> <p>제15조의2(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p>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하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p> <p>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하고, 기부채납된 구분소유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8. 14.]</p> <p>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p>	<p>3. 소득증대사업의 내용 4. 사업별 지원계획 5. 사업의 효과</p> <p>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 이상 61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6.></p> <p>③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1. 5. 18.></p> <p>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17.></p> <p>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법시설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p> <p>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p>	<p>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p> <p>3. 마을단위 오페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개선사업 등 지역환경개선사업일 것</p> <p>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p> <p>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17. 7. 17.></p> <p>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14., 2017. 7. 17.></p> <p>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p> <p>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 5. 21., 2023. 4. 18.></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제5항에 따른 가산금</p>	<p>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17조</p> <p>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p> <p>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8. 9.></p> <p>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p>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p>	<p>를 말한다.</p> <p>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14., 2021. 5. 18.></p> <p>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 6. 14., 2021. 5.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3의2.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p> <p>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7. 8. 9., 2023. 8. 16.></p> <p>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p>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2024. 2. 17.] 제18조</p> <p>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p>	<p><개정 2016. 6. 14.></p> <p>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14.></p> <p>⑦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14.></p> <p>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본조신설 2016. 6. 14.]</p> <p>제15조(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와 같다. <개정 2017. 1. 17.></p> <p>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p> <p>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p>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p> <p>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p> <p>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p> <p>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p>	<p>2013. 3. 23., 2016. 6. 14.></p> <p>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p> <p>2.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및 소음대책위원회의 운영</p> <p>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 방지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p> <p>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p> <p>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p> <p>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p> <p>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p> <p>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2023. 8. 16.></p> <p>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2. 17.] 제19조</p> <p>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p>에 따른 소방시설공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p>②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p> <p>③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6.]</p> <p>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14., 2017. 12. 26., 2021. 5. 18., 2021.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1의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해당한다)</p> <p>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p> <p>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p> <p>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20. 4. 7.></p> <p>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p> <p>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p> <p>3.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2.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p> <p>2의2.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p> <p>2의3. 법 제12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p> <p>3. 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p> <p>3의2.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설정을 위한 자료의 접수</p> <p>4. 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p> <p>5. 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p> <p>6. 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p> <p>7. 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p> <p>8. 제2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p> <p>1.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p> <p>2. 법 제11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p> <p>3.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p> <p>[본조신설 2017. 3. 27.]</p> <p>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p> <p>③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p> <p>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채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부칙 <제33135호, 2022. 12. 27.></p> <p>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 8.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p>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5. 18.]</p> <p>제27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p> <p>부칙 <제18184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